-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제2565호

2021. 03. 16.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21. 2. 26. 양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1. 3. 4. 행정재경위원회

다. 상정일자 : 제28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

2021. 3. 16.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행정지원국장)

가. 제안이유

부조리 신고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임·직원을 포함하고, 부조리 신고방법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을 정비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제명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.(안 제명)

○ 부조리 신고대상인 공무원 등의 범위를 양천구 공무원 및 「공직자윤리법」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지방공단 및 기관·단체의 임·직원까지로 함.(안 제2조)

○ 부조리 신고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3조)

○ 부조리 신고는 해당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는 5년이 되는 날까지로,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7년,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15년으로 함.(안 제4조)

○ 신고자 및 신고 협조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5조 및 제6조)

○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'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'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.(안 제7조 및 제8조)

○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방법과 지급제외 사유, 환수 등에 관한사항을 정함.(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한동석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부조리 신고대상에 양천구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고,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함.

또한,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'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'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.

나. 개정안의 제출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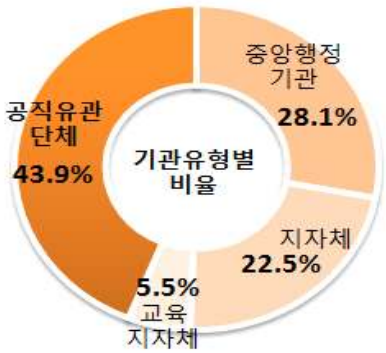
○ 최근 3년 간 공직자의 부패행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음.

< 최근 3년간 기관유형별 비위면직자 현황 >

* 비위면직자 발생현황은 징계처분일 기준

(단위 : 명)

유형별	합계	'16.	'17.	'18. 상
합계	777	312	308	157
중앙행정기관	218	118	68	32
지자체	175	70	71	34
교육지자체	43	18	22	3
공직유관단체	**341**	**106**	**147**	**88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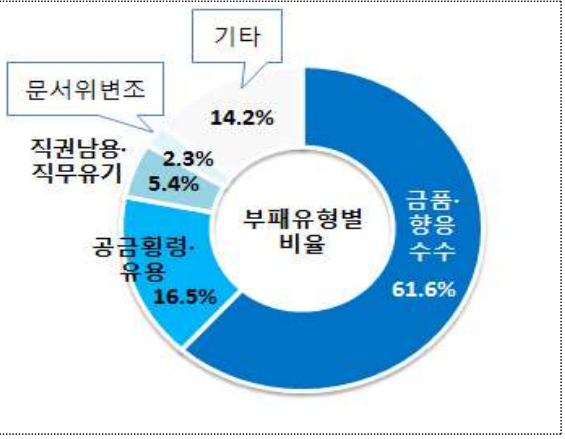
(자료: 국민권익위 '19. 1/4분기 통계자료집 재구성)

○ 비위면직자의 부패행위 유형은 다음 그림과 같이 금품·향응 수수가 가장 많고, 공금횡령·유용이 그 다음 많은 것으로 나타남.

※ 금품·향응 수수 관련 부패의 비율이 전체 부패 발생비율의 61.6%에 이름

< 최근 3년간 부패유형별 현황 >

유형별	합계	'16.	'17.	'18. 상
합계	777	312	308	157
금품·향응수수	479	206	191	82
공금횡령·유용	128	52	51	25
직권남용·직무유기	42	24	15	3
문서위변조	18	5	3	10
기타	110	25	48	37



(자료: 국민권익위 '19. 1/4분기 통계자료집 재구성)

○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공무원뿐 아니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조리도 심각함을 알 수 있음.

○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에서는 기존 부조리 신고대상에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.

○ 또한, 현행 「지방공무원법」제73조의2 (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) 에는 일반 부조리는 3년, 금품·향응 수수, 공금횡령·유용 등 부패와 관련된 부조리는 5년으로 신고기한을 설정하고 있으나, 국민권익위에서는 국민의 신고 활성화,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중대범죄(수뢰액 3천만 원 이상 등)에 한해 신고기한을 없애거나 7~15년으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음.

다. 종합의견

○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「공직자윤리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, 「형사소송법」, 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 등 상위법령을 따르고 있음.

○ 국민권익위 의결(의안번호 제 2019-318호) "지방자치단체 반

부패 신고 보상·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" 의 권고를 따르고 있음.

○ 현행 조례는 2006년 12월 26일 제정 이후 약 15년 간 개정을 하지 않아 변화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담아 개정할 필요가 있음.

○ 또한 별표의 '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'이 기존 30만 원이하에서 100만 원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신고유형별로 100만 원 이내에서 300만 원 이내로 증액하여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.

○ 상위법령과 국민권익위 의결을 따르고 있고, 변화한 시대상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전부 개정이라 보고 드림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의원 9명, 출석의원 8명 만장일치 의결)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